

**강동아트센터**

Gangdong Arts Center

**아트갤러리 대관 규약**

# 아트갤러리 대관 규약

## ■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강동구가 운영하는 강동아트센터의 아트갤러리(#1, #2)등 전시시설의 대관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공연', '전시',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강동구(강동아트센터)와 대관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대관의 범위는 강동아트센터의 전시를 위한 기본시설과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 제 3 조 대관의 신청 및 종류

- (1) 대관의 종류는 대관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2) 정기대관은 매년 상·하반기 강동아트센터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신청 심사 확정한다. 단, 강동아트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외의 전시도 신청, 승인할 수 있으며 본 항의 경우 강동아트센터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 (3) 제②항의 정기대관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및 대관 취소, 공실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추가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4)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 잔여일정 발생시에 수시로 시행한다.

## ■ 대관료

### 제 4 조 대관료 산정

대관료는 강동구가 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 (1) 사용료의 감면
  -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도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또는 강동아트센터는 제①항의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용료의 감면 기준 및 감면률은 다음과 같다.
    - 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100%
    - 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 iii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수예술활동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
- (2)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및 무대기술 지원의 사용료는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한다.

### 제 5 조 대관료 계약금 및 잔금 납부

- (1) 정기대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7일 이내에 강동아트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30%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잔금은 전시시작일 60일 이전까지 강동구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 (2) 수시대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7일 이내에 강동아트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본 대관료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잔금은 전시시작일 15일 이전까지 강동구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 승인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전시시작일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대관료는 발생즉시 납부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대관료는 전시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 정산한다.
- (4) 대관자가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강동구가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기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5) 전시 준비기간 및 작품 반출시간을 위한 시간은 09:00~19:00로 한다. 전시준비 및 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전시대관료의 50% 할인 적용하며,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2시간 기본 단위로 1일 사용료의 50%할증을 적용한다.
- (6)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6 조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동구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2) 강동아트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3) 부대시설 신청 후 사용 7일 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시준비대관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

대관기간 \ 해지시점	사용예정일로부터 120일 이전	사용예정일로부터 120~150일	사용예정일로부터 150일 이후
7일 이내	반환 안함	납부한 계약금 중 30%	전액 반환
8일 이상		반환 안함	

## ■ 대관신청 및 심사, 승인

### 제 7 조 대관신청

- (1) 아트갤러리 신청시에는 "갤러리 대관신청서", "전시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관련자료(주요경력, 실적자료 등)를 강동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대관신청 시 대관기간은 작품설치를 위한 준비기간, 전시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일주일을 기본단위로 하며, 휴관일은 사용기간에서 제외 한다.
- (3)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② 강동아트센터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강동아트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③ 일반행사, 의전 등 아트갤러리 본래의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④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 변경을 2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 ⑤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 ⑥ 특정한 종교나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전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 ⑦ 기타 전시의 내용, 수준이 강동아트센터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 ⑧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 제 8 조 대관심사

- (1) 대관심사위원회는 정기대관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시대관의 경우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동아트센터 관장이 담당한다.
- (3) 위원회의 일부위원은 장르별 외부 전문가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 제 9 조 대관승인 기준

- (1) 대관승인 기준은 대관자의 신청내용과 대관심의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2) 대관일수 및 일정경합시의 처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① 객관적으로 우수한 전시 및 지명도 높은 작가 순으로 한다.
  - ② 개인전의 경우 전시경력, 예술적 성과, 전시품위, 신청서류의 성실도를 고려하여 대관한다.

## 제 10 조 대관승인

- (1) 강동구는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강동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3)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강동구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 대관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아트갤러리 사용시간

### 제 11 조 대관의 범위 및 사용시간

- (1) 대관에 따른 아트갤러리 사용시간은 09:00~19:00까지이며, 관람시간은 10:00~18:00로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대관자는 전시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센터와 사전협의하여 정하고 8시간 초과 사용료는 제5조 제⑤항의 기준을 따른다.
- (2) 대관자는 전시 기간 중 입장인원과 입장료 수입을 일자별로 강동아트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 (3) 아트갤러리 유지관리를 위해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된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 대관승인취소, 변경금지, 대관취소

### 제 12 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강동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② 강동아트센터가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③ 강동아트센터가 지정한 기일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 ⑤ 아트갤러리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⑥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아트갤러리대관 취소의 경우 기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시작일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제7조 제③항에 의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3) 대관 승인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강동구는 그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하 범위권내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 ①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생한 경우
  - ② 계약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 ③ 강동구에 미수금이 발행한 경우
  - ④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⑤ 대관자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⑥ 강동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주요 출품작가, 작품 등 전시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전시한 경우

### 제 13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제 14 조 사용내용 변경금지 및 대관 취소

- (1) 대관자는 전시내용, 작가구성 등을 강동아트센터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시시작일 전까지 반드시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 대관기간 중 전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전시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3) 강동구는 대관자가 아트갤러리 또는 부대시설 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료를 부과한다.
- (4)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 (5)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6조에 의해 처리된다.

## ■ 아트갤러리 사용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 제 15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1) 대관자는 전시, 부대행사 등을 위해 현수막 설치, 부스설치 등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는 경우 강동아트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위 ①호에 의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도록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강동아트센터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제 16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강동아트센터의 시설(아트갤러리, 아트갤러리의 집기, 비품 등)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위 의무를 다해야 하며, 아트갤러리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관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2) 강동아트센터는 대관기간 중(전시준비 및 마무리기간 포함) 전시와 관련하여 강동아트센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작품, 전시물 및 설비에 관한 관리책임은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반출기간의 전 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강동아트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입장권 발행 및 수표관리

### 제 17 조 입장권의 발생 및 검인

- (1) 대관전시 및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시설별 범위 내에서 강동아트센터 관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사용자가 발생한다.
- (2) 입장권 및 (초대)교환권의 발행은 강동아트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티켓판매를 통한 전산발권을 의무화하되, 입장권 및 교환권 발행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가 지고, 필요시 강동아트센터는 입장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 (3) 국가, 서울시, 강동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입장권 발행은 생략할 수 있다.
- (4) 입장권 검인시에는 “입장권 검인요청서”를 작성하고, 가격표, 입금 확인증을 첨부하여 전시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5)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하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전시관람 중에는 전시관계자의 안내에 협조해야 한다.
  - ② 아트갤러리 안에서는 촬영 및 녹음 등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음식물이나 화환 및 꽃다발은 아트갤러리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 ④ 전시관람 중 본인의 잘못에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강동아트센터나 대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 (6) 입장권 및 교환권은 강동아트센터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발권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강동아트센터와 협의해야 하며,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8 조 입장권 판매 및 매표, 초대권, 수표관리

- (1) 대관자는 총 자석의 등급별 최소30%의 티켓을 강동아트센터에 등록하여 판매해야 한다.
- (2) 강동아트센터에서 판매되는 티켓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6%(부가세 별도)를 일괄적용하며 추가 발권료는 장당 100원이다. 추가 발권은 강동아트센터에서 판매된 티켓을 제외한 나머지 티켓에 대한 발권과 초대권 등을 말한다. (발권 후 환불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는다)
- (3)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명기된 할인 대상 및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할인은 강동아트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 (4) 전시 당일 아트갤러리 현장매표소는 강동아트센터에 의해 운영되며 설치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권업무를 진행한다.
- (5) 입장권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강동아트센터에서 담당한다.

## ■ 홍보물, 방송 협의

### 제 19 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 (1) 대관자는 전시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시 강동구 및 강동아트센터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 할 경우 강동아트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재한다.

#### **제 20 조 방송, 판촉, 부대행사 등**

- (1) 전시 녹화 또는 방송촬영 시에는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상황 등에 대해서 강동아트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 (2) 부대행사(세미나, 퍼포먼스, 판촉 등)는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 한하며, 이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강동아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부 칙**

#### **제 21 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 (1) 본 규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2) 본 규약은 2012년도 전시를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 22 조 규약위반시의 책임**

-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강동아트센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대관자는 강동아트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강동구와 강동아트센터는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제 23 조 적용규약**

이 규약은 강동아트센터와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 24 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은 강동구청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